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5.12.30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25.11.6)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본 시행령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화특구위원회 운영 사항의 고시 위임 근거 마련(제9조)

행정의 신속성 도모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중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의결 절차 간소화

나. 특화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도입(제14조)

특화특구 지정 심의 시의 고려사항으로 객관적 심사기준을 도입하고, 세부 심사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다. 특화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제15조)

특화특구 지정해제 요건이 되는 성과평가 하위 비율을 5% → 10%로 확대하고, 누적 부진 횟수를 3회 → 2회로 강화

라. 특화특구 업무위탁 근거 신설(제19조의2)

특화특구 지정·운영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신설

마.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특화사업자 자격요건 마련(제28조)

외국어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을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명확화

바. 규제자유특구 계획 및 지정 변경 시, 공고 및 열람기간 단축(제43조)

특구 계획 및 특구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공고 등 기간단축(30일 → 15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 유지

사.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간 설정(제55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특구 지정 해제 및 기간 만료 후 자료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

아. 규제특례 조건의 부가기준 마련(제57조의3, 제64조의3 신설)

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시, 조건의 부가기준을 명확·구체화

자.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신청방법, 절차 등 구체화(제62조의2 신설)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인해 금원이 지급되는 ‘수급전용계좌’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지급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를 “의견을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1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원, 전문인력 및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 특화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5조제2항제3호 중 “3회”를 “2회”로, “5”를 “1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조제1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이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결과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할 때까지 해당 특화특구의 지정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장제1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 업무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지원에 관한 업무
 5. 법 제27조에 따른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 지원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특화사업자를 말한다.

제29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기업 등이 12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법 제75조제2항 단서 및 이 영 제40조제3항”을 “법 제72조제4항 및 제75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법 제84조”를 “법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외에”를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및”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2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86조제9항”을 각각 “법 제86조제10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법 제86조제7항”을 “법 제8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6조제6항”을 “법 제86조제7항”으로 한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실증특례에 부가하는 조건의 기준) 중소기업부 장관은 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증을 위한 사업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

2. 실증을 위한 사업에 따른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항만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
3. 실증사업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부가할 것
4.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아니할 것
5. 현행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제품에 적용되는 사항보다 강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아니할 것
6. 안전성 검증 또는 실증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아니할 것

제60조제1항 중 “제90조제14항”을 “제90조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86조제9항”을 “법 제86조제10항”으로, “제90조제10항”을 “제90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90조제14항”을 각각 “제90조제15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0조제14항”을 “제90조제15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0조제14항”을 “제90조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0조제13항”을 “제90조제14항”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이 조에서 “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

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③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90조제10항”을 각각 “법 제90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90조제11항”을 “법 제90조제12항”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 중 “법 제90조제8항”을 “법 제90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0조제7항”을 “법 제90조제8항”으로 한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임시허가에 부가하는 조건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시허가에 따른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항만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
2. 임시허가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부가할 것
3.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아니할 것
4. 현행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제품에 적용되는 사항보다 강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아니할 것
5. 임시허가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아니할 것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자유특구”를 “법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수행하게 할”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하게 할”을 “위탁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지원”을 “업무위탁”으로 한다. 제68조 및 제6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호라목 위반행위란 라목 중 “법 제90조제12항”을 “법 제90조제1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해제 등 요건에 관한 특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하위 100분의 10 이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

내로 본다.

1. 2026년도까지의 실적에 대한 평가: 하위 100분의 6
2. 2027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하위 100분의 8
3. 2028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하위 100분의 9

제3조(지정해제 등 요건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부칙 제2조의 특례를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순위가 하위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였던 횟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횟수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순위가 하위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였던 횟수가 2회인 특화특구의 경우에는 향후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가 제15조제2항제3호(부칙 제2조에 따라 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게 되면 그 횟수를 통산하여 3회가 되는 때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화특구 위원회의 <u>의결을 거쳐 특화특구</u> <u>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u>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u>의견을 들어 중소벤처</u> <u>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u> <u>다.</u>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 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 시 고려사항)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에</u> <u>필요한 자원, 전문인력 및 기</u> <u>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 특화</u> <u>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u> <u>기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u> <u>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u>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법 제24조 및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③ ~ ⑥ (생략)

<신설>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3. -----

----- 2회 -----
----- 10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조제1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이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결과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할 때까지 해당 특화특구의 지정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 업무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원

제28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6. (생략)

<신설>

2.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 운영의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지원에 관한 업무
 5. 법 제27조에 따른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지원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① 법 제42조제1항-----

-----.

1.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 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략)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

<삭 제>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① -----

----- . 다만, 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일
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기
업 등이 12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_____

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5조제2항 단서 및 이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74조제2항, 이 영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 ④ (생략)

제55조(사후관리 등) ① 중소기업부 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
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법 제3장제2절의

법
제72조제4항 및 제75조제2항 단
서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사후관리 등) ① -----

----- 법
제84조제1항-----

특례의 적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② (생략)

<신설>

③ 제1항 외에 사후관리의 기준
· 방법 ·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
항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
의 ·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⑧ (생략)

⑨ 법 제86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
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
할 비수도권 시 · 도지사등을 거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
8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
되었거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
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
에 관한 자료를 2년 동안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및 -----

-----.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86조제10항 -----

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 6. (생략)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⑪ (생략)

제57조의2(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법 제8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이하 이 조에서 “실증특례 재심의”라 한다) 신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에 제5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

1. ~ 6. (현행과 같음)

⑩ ----- 법 제86조제10항 -----

-----.

⑪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
--- 법 제86조제8항 -----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신설>

---.

② -----
----- 법 제86조제7항-----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실증특례에 부가하는 조건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증을 위한 사업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

2. 실증을 위한 사업에 따른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항만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

3. 실증사업 관리를 위한 관리 기준을 최소한으로 부가할 것

4.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아니할 것

5. 현행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제품에 적용되는 사항

	<u>보다 강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아니할 것</u>
	<u>6. 안전성 검증 또는 실증을 위 한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아니할 것</u>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① 실 증특례 및 법 제90조제1항에 따 른 임시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 2항 본문 및 <u>제90조제14항</u> 본문 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 행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 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제출 해야 한다.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① --- ----- ----- ----- ----- <u>제90조제15항</u>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 후여야 하며, <u>법 제86조제9항</u> 단서, <u>제87조제10항</u>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 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 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	② ----- ----- ----- ----- <u>법 제86조제10항</u> ----- ----- ----- ----- -----

한다) 또는 제90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등의 증서 사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4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 4. (생략)

④ (생략)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4항 본문에 따른 책임

----- 제90조제11항 -----

-----.

-----.

③ -----

-- 제90조제15항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90조제15항 -----

보험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생략)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2
항 단서 및 제90조제14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하고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
· 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4항
의 책임보험등 또는 배상 방안
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

----- 제90조제15항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① ---
----- 제90조제15항 -----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④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제13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⑥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90조제14항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
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이 조에서 “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

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
관의 폐업·업무정지 등으로 정
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
다.

③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
에 따른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
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
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
른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
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손해배
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⑧ (생략)
⑨ 법 제90조제10항 단서에 따
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90조제11항 -----

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 6. (생략)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11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하거나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⑫ (생략)

제64조의2(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① 임시허가 신청을 요청한

-----.

1. ~ 6. (현행과 같음)

⑩ ----- 법 제90조제11항 -----

---.

⑪ -----
법 제90조제12항-----

⑫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① -----

<신 설>

1. 임시허가에 따른 위험 우려
가 있는 경우에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항만을

제67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 등 업무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조건으로 부가할 것

2. 임시허가 관리를 위한 관리 기준을 최소한으로 부가할 것

3.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아니할 것

4. 현행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제품에 적용되는 사항보다 강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아니할 것

5. 임시허가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아니할 것

제67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 등 업무지원) ① -----
----- 법 제141조의5제2항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 위탁할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위탁할 -----

---.

1. ~ 5. (생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의2(국제협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업무
위탁-----

-----.

<삭 제>

<삭 제>

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3.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생략)				
라. 법 제90조제1 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물적 손해 에 대한 배상 방 안을 마련하지 않 은 경우	법 제143 조제1항제 4호			
(생략)				

[부칙]

<신 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생략)				
라. 법 제90조제1 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물적 손해 에 대한 배상 방 안을 마련하지 않 은 경우	법 제143 조제1항제 4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해제 등 요건에 관한
특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 “하위 100분의 10 이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내로 본다.

1. 2026년도까지의 실적에 대한 평가: 하위 100분의 6

2. 2027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하위 100분의 8

3. 2028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하위 100분의 9

제3조(지정해제 등 요건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부칙 제2조의 특례를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순위가 하위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였던 횡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횡수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순위가 하위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였던 횡수가 2회인 특화특구의 경우에는 향후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가 제15조제

2항제3호(부칙 제2조에 따라 비
율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
게 되면 그 횟수를 통산하여 3
회가 되는 때에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
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을 변경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209